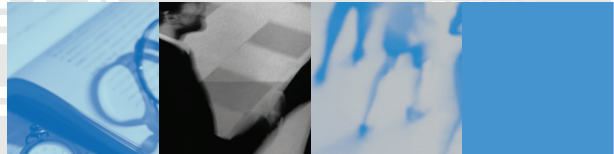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전진영(정치학 박사)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선화(법학 박사)

정치의회팀 팀장 이현출(정치학 박사)

2009. 11. 12



## 요 약

-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행정부 견제수단의 일환임
- 2000년부터 실시된 국회의 인사청문제도의 특징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검증을 하는 반면,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함
  - 또한 헌법에 의해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회의 인사청문결과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법률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함
-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실시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줌.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한 인사검증, 후보자의 정책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집중되는 인사검증, 부실한 자료제출과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의 부재 등이 그것임
- 반면 미국상원의 인사청문제도의 특징은 백악관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에 통상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되며 법정기간이 없다는 점, 상원의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주관한다는 점,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준기준은 느슨한 반면 대법관에 대한 인준은 까다롭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국회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인사청문기간 확대, 인사청문 주관기관의 일원화, 인사청문 심사단계의 이원화 등 절차상의 개선방안, 후보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방안마련 등을 제시함



# 차 례

## □ 요약

### I. 서론 / 1

### II.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특징 / 3

- 1.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연혁 ..... 3
- 2. 인사청문회의 이원적 운영 ..... 6
- 3. 대통령제와 인사청문회의 기속력 ..... 9

### III.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 12

- 1.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 12
- 2.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 ..... 12
- 3. 인사청문 절차 ..... 15
- 4. 인사청문 질의내용 ..... 18

### IV.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 25

- 1. 인사청문 절차의 개선 ..... 25
- 2. 후보자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27
-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방안 ..... 30
- 4.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개선방안 ..... 35

### V. 결 론 / 39

## □ 부록

[부록 1]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인준청문회 질문목록

[부록 2] 존 로버츠(John G. Roberts) 연방대법원장 인준청문회 질문목록

[부록 3] 필리핀의 인사청문제도



## I. 서론

- 최근 국회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즉 인사청문제도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자질과 공직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고, 여야간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인사청문에 반영되어 여당은 후보지명자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발언을 하는 반면 야당은 비판 일색의 발언을 하는 대립을 보임
- 이 같은 관행은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며,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함. 인사청문제도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3권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라는 점임.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차원에서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의 인사청문이 여야간의 대립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및 원내정당간의 갈등구도라는 정치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현행 인사청문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특히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법정시한, 인사청문 주관기관의 이원화,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허위진술을 막을 수 있는 제재방안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기준으로 삼을만한 객관적인 평가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도 있음



- 이하에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인사청문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만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대법관 및 국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제내용과 우리나라 대법관 및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교할 것임

## II.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특징

### 1.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연혁

#### 가. 인사청문회의 의의

- 인사청문회라 함은 의회가 헌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국가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 등을 듣는 청문회를 말함
- 인사청문회의 주요기능은 공직후보자가 해당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사법부의 구성을 견제하는 것임. 또한 인사청문회를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함<sup>1)</sup>
- 인사청문회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각료 등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의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므로 그다지 유용한 제도로서 활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필리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sup>2)</sup>

1)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p.737, 2008.

2) 필리핀의 인사청문제도는 <부록 3> 참조

## 나. 연혁

- 제15대 국회의 국회법개정(2000. 2. 16)으로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 2003년 2월 국회법개정시,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고,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
-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2006년 12월 국회법 개정에서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2007년 12월 국회법 개정에서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2008년 2월 국회법 개정에서 인사청문대상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국회의 헌법기관 선출권에 근거하여 동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권력분립원칙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어 옴

(1) 헌법상 국회의 국가기관 선출권

-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고(헌법 제11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을 선출함(헌법 제114조)
- 국회가 독자적으로 헌법기관구성권을 가지는 경우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선출할 자에 대한 검증과 국민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게 됨

(2)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권

-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광의의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

### (3) 법률상 국회의 인사청문권

-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에도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음
- 이는 대통령의 전속적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법률로써 정한 사항이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가능할 것임

## 2. 인사청문회의 이원적 운영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다르다보니 인사청문회 자체도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절차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동의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행사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동의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이므로, 동의를 결정하지는 않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따른 이원화

소관 위원회	구 분	대 상	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회 동의대상	국무총리(후보자 포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17인
	국회 선출대상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6인
	소 계		23인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기관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6인
	헌법재판소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국무위원	장관 16인(특임장관 포함)	16인
	소 계		34인
합 계			57인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대상자(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함
-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됨
-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운영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인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함(동법 동조제3항). 또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함(동법 동조제5항). 이에 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바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됨
- 인사청문회의의 운영과 절차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경우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인사청문회의의 특성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운영방식을 따르는 외에는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의의 운영과 절차에 따르게 됨
- 결국, 대상자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로 구별되나, 그 운영이나 절차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 3. 대통령제와 인사청문회의 기속력

#### 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인사권

- 인사에 관한 권한은 보통 임명, 해임권으로 구성됨. 이를 상세히 구별한다면, 임명을 위하여 지명과 검증이 따르게 되며, 해임을 위하여 직무감찰, 평가 등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주요국가기관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명권을 가지며, 또한 행정부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최정점에서 행정부의 구성에 관한 책임과 인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독적인 인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원수로서 행사하게 되는 임명권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단독적인 인사권에 의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나. 국회의 동의권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의 인사권은 지명권, 동의권, 임명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중에서 지명권과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나,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 것으로 인사권을 분리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결과의 대통령에 대한 기속

-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전속적인 인사권이 행사되는 공직후보자(예컨대 국무위원)에 대하여 실시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통령이 기속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음<sup>3)</sup>
  - “대통령이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므로(헌법 제78조), 그 임명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인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됨
-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법률에 규정한 취지상, 헌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률에 정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방해가 아닌 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기속을 받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sup>4)</sup>
- 그러나,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

3) 헌재 2004. 5. 14 선고, 2004 헌나 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6권제1집, 650면.

4) 김철수, 헌법학, 2008, 1638면.

할 수 없게 될 것임. 따라서 강제적 기속력을 부여하기 보다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얻는다면, 대통령이나 다른 헌법기관으로서도 법적인 책임보다도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직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서 보다 차원높은 방향의 제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임

### Ⅲ.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 1.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즉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후보자 임명에 필수적인 반면, 법률에 의거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권이 없음
- 미국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제2항에 대통령의 공직 임명 권한에 대한 상원(Senate)의 인준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 「헌법」 제2조제2항**

대통령은 대사 및 기타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대법관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직으로, 헌법에 별도의 임명규정이 없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직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절차는 미국상원 의사규칙 제26조(위원회 의사절차), 제31조(인준절차) 등에서 정하고 있음

#### 2.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직위는 총 57개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행정부 기구와 부처의 공직(PAS: Positions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만도 공식적으로 총 1,141개에 이릅니다<sup>5)</sup>

- 여기에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행정부의 장·차관과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이상의 직위, CIA 국장과 FBI 국장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장, 각국 대사와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 등이 포함됨
-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인준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 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준이 이루어짐
- 대개 2년의 회기 동안 약 4,000건의 공직과 65,000건의 군인 임명에 관한 인준동의안이 제출되는데, 대다수는 관례적으로 인준되고 상원에 의해서 인준이 거부된 사례는 많지 않음<sup>6)</sup>
-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2% 미만임. 20세기에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한 것은 세 차례(1925년, 1959년, 1989년)에 불과함
- 이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상원인준까지 가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준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임<sup>7)</sup>

5) 상원의 국가안보및정부업무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가 발간하는 플럼북(plumbook) 참조.  
([http://www.gpoaccess.gov/plumbook/2008/index.html#executive\\_president](http://www.gpoaccess.gov/plumbook/2008/index.html#executive_president)).

6)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Nominations.htm>

7)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장관으로 지명됐던 톰 대슐(Tom Daschule)의 경우 상원의 인준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경우임.

- 반면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며, 실제로 상원에 제출된 인준안의 4분의 1정도는 거부되거나 철회되었음
  - 1789년부터 2008년까지 158명의 대법관 인준안이 심사되었는데, 122건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반면, 36건은 상원의 인준획득에 실패하였음. 이 중 인준이 거부된 경우가 12건, 지명이 철회된 경우가 11건, 그 밖에 심사가 연기되거나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례가 17건이었음
  - 행정부 각료에 비해 대법관에 대한 인준율이 낮은 이유는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고,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수행을 견제하거나 대통령과 의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임
- 연방대법관의 인준거부 사유에 대한 분석<sup>8)</sup>에 따르면, 인준거부 사유는 몇 개의 범주로 구분됨
  -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에 대한 반대
  - 후보지명자의 입장에 대한 반대
  - 현 법원에 대한 반대: 현 법원의 관점과 판결기록에 대해 대다수의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는데, 후보자가 현 법원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 상원의 의례(Senatorial Courtesy): 상원에는 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명할 경우 해당 지역구의 상원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의례가 있는데, 상원의원이 후보자 지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업무자질이나 능력의 부족
  - 이익집단의 반대

8) Henry B. Hogue, 2009, "Supreme Court Nominations Not Confirmed, 1789-2008," CRS Report RL31171.

### 3. 인사청문 절차<sup>9)</sup>

-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와 상임위원회의 청문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을 거치지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의 결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만 할 뿐 표결을 거치지는 않음
-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요구자료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함
- 미국상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대통령이 상원에 공직후보자(nominee)에 대한 후보지명서(인준동의안)를 제출하면서 시작됨
- 미국의 인준절차의 특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사전 인사검증이 철저하다는 점임
- 즉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후보자에게 각종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데, 백악관 신원진술서·국가안보직위 진술서·재산상황진술서를 비롯하여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 동의서와 의료기록제공 및 납세기록조사 허가서 등을 백악관 비서실에 제출해야 함
- 대통령의 후보자 인사검증에만 2-3개월이 소요됨

9) Lorraine H. Tong, 2009, "Senate Confirmation Process: A Brief Overview," CRS Report RS20986.

- 미국의 경우 후보자 인준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됨
  - 인사청문회는 해당 공직이 속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함
  - 제출된 인준동의안은 만장일치 동의가 없는 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이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할 수는 없음 (상원의사규칙 제31장 제1조)
-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청문회 준비
  - 소관 상임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전달하여 답변서를 제출받고, 재산공개 내역과 각종 경력·병역사항·범죄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의 조사를 수행함
-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청문회(confirmation hearing) 개최
  - 후보자에 대한 소개와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인준청문회를 개최함
  - 인준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시되며, 모든 후보지명자에 대해 인준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위직 후보자(장·차관급)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 상임위원회의 인준동의안 의결 및 본회의 보고
  - 인준청문회가 종료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준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 상임위원회의 선택은 후보자지명에 우호적으로 보고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하거나, 아무런 권고 없이 보고하는 것이며,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no action)도 있음

- 소관위원회가 인준청문회 이후 며칠 내에 인준동의안을 의결해야 하는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즉, 위원회별로 상이함)

□ 본회의 심의

-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 행정부 관련 안건처리 회기(executive session)에 인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원 본회의가 소집됨
-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토론종결의결(cloture)<sup>10)</sup> 규칙의 적용을 받음
- 상원의원은 정당지도부에 인준동의안에 대한 "보류(holds)"를 요청함으로써 인준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
-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인준동의안은 대개 구두표결로 의결됨

□ 대통령에게 통지

- 인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결과는 대통령에게 통지되고, 상원의 인준을 얻으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함

10) 토론종결의결(cloture)이란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상원의원 16인이 서명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를 표결에 부쳐 상원의원 60인(super-majority)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하는 제도임.



## 4. 인사청문 질의내용

### 가. 한국의 국무총리와 미국의 국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비교

#### (1)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sup>11)</sup>

-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관련 질문
  - 병역면제의 사유와 병역회피 의혹
  - YES24 고문직 수행에 따른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 공직자 재산등록의 성실성과 세금탈루 여부
  -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문제
  - 장남의 이중국적문제
- 국무총리직 수행 관련 질문
  - 서민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비 예산배정
  -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입장
  -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론에 대한 입장
  -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
  -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 준조세 부담경감, 공기업 민영화, 평택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입장 등

11) 2009년 9월 21일-9월 23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회의록 참조([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4/pdf/284te0002b.PDF#page=1](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4/pdf/284te0002b.PDF#page=1)).

□ 정책현안 관련 질문

- ‘세중시’ 원안변경에 대한 입장,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 감세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
- 용산사태에 대한 입장
- 서민정책: 미소금융, 개인채무탕감제도, 비정규직 문제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 출구전략의 시행시기,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평가, 환율정책
- 개헌관련: 바람직한 정부형태
- 공무원 노조관련: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에 대한 입장
- 교육정책: 본고사 부활, 교육감 직선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견해
- FTA에 대한 소신
- 행정체제개편 및 지방분권 관련

(2)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sup>12)</sup>

-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sup>13)</sup> 관련 질문
  -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과 클린턴 재단의 세계적 활동과의 조화방안
  - 클린턴재단에 대한 기부금 처리의 투명성
-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
  - 국무부 직원의 증원필요성에 대한 입장
  - 국무부 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문화적·도덕적 지원방안
  - 국무부 해외근무 직원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
- 국무부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
  -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간의 국경분쟁에 대한 입장
  - 국가안보 차원에서 독립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 북극정책,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난민문제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 빈민국 원조, 해외원조 촉진방법

12) 구체적인 질문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함. 인준청문회 회의록은 다음을 참조함 ([http://www.cfr.org/publication/18225/transcript\\_of\\_hillary\\_clintons\\_confirmation\\_hearing.html](http://www.cfr.org/publication/18225/transcript_of_hillary_clintons_confirmation_hearing.html)).

13) 클린턴 재단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이후 설립한 재단으로, 지구온난화·에이즈·소아비만 등과 같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ttp://www.clintonfoundation.org/about-the-clinton-foundation/>)

-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이라크에 남는 미군의 성격
- UN 경영개혁의 착수시기

### (3) 비교검토

- 정운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자의 개인적 신상 및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점임. 반면 힐러리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질문 중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은 한 건도 없었으며, 국무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클린턴 재단과 관련된 질문뿐이었음
- 이는 미국의 경우 상원에 후보자 인준안을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며,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서면질의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면, 미국상원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업무수행 계획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전망적(prospective)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국회의 경우 후보자의 병역·탈세·부동산투기·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 청문회(hearing)란 의원들이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

회의원은 후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말하는데 치중하는 반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짧은 질문을 한 뒤 후보자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고 있음

- 국회에는 발언시간 제한규칙이 있는 반면, 미국 상원의 경우 특별히 발언 시간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나. 우리나라 대법관과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비교

##### (1)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sup>14)</sup>

- 세금공제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
-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 사형제도, 낙태, 현재의 인권상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문제, 야간에 아동을 시위에 대동하는 문제, 안락사, 소년범 문제, 사법적 해석과 관련된 사항
- 사법권 독립, 법관양성시스템, 법률서비스의 개선사항, 고등법원 상고부설치 문제, 법관의 관료화 문제, 법관 퇴직 후 취직의 문제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사항

14) 2009. 2. 10. 제281회 국회(임시회) 대법관(신영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2) 존 로버츠(John G. Roberts) 연방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청문회<sup>15)</sup>

- 법률이나 법리 등 철학적 성향에 관한 질문 및 과거의 직무경험 등에 관련된 내용
- 권력분립 및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에 관한 견해
- 판례와 법리에 관한 질문, 선례구속의 원칙에 관한 질문, 외국법과 미국법의 관계, 환경문제, 사형제도, 통상조항, 인종차별, 여성의 인권, 표현의 자유, 권리장전, 종교와 국가의 관계 등 사법부의 쟁점사안에 대한 견해
- 대법원과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 대법원장의 직무와 임기에 관한 견해

(3) 비교검토

-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의 인준청문회와 우리나라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의 질문목록을 비교하면, 질문유형 자체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 다만, 미국의 경우는 선례구속원칙이 지배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견해와 입장 등을 매우 상세하고 중대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청문회장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연방대법원장 후보자가 충분한 발언시간을 가지고 발언을 하며, 말을 하는 중간에 말을 막거나 중복질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15) 구체적인 질문목록은 <부록 2> 참조. 존 로버츠 대법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회의록은 다음을 참조함.

(<http://www.gpoaccess.gov/congress/senate/judiciary/sh109-158/browse.html>)

-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한 과거의 재산형성문제 등이 반복하여 질문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선과정 중에 사전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과 비교하여,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가로 막는 경우와 질문자가 더 오래 시간을 쓰고 공직후보자는 답변을 짧게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IV.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 1. 인사청문 절차의 개선

#### 가.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 현행법에 규정된 총 20일의 인사청문기간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청문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제105대 의회의 경우 인준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평균 73일이 걸렸음
-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 20일인 임명동의안의 심사기간, 현행 15일인 위원회 심사기간, 현행 3일인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사청문 제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어 있음<sup>16)</sup>

#### 나. 인사청문회 주관기관의 일원화<sup>17)</sup>

- 현재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

16)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1804211)

17) 이 방안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음.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9, p.89.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주관기관을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함. 또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위원선임 문제로 지연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 청문일정의 지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인사청문회 주관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겠음

#### 다. 공직후보자 심사단계의 이원화

-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병역이나 탈세 등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치중되어 있어서,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1차 예비심사와 2차 청문회 심사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 1차 예비심사에서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이나 학력, 경력, 군경력, 재산형성문제, 기타 개인적 사항에 대한 서류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함
  - 예비심사는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수행됨
  - 예비심사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의 확인에 집중하는 서류심사 위주임

- 예비심사에서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다 강화한 ‘조사권’의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차 청문회심사에서는 1차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함
- 청문회 심사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실관계의 확인보다는 정책적인 입장과 공직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활용함
- 청문회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검토된 사항 중 후보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이 중복하여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순사실을 확인하는데 청문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2. 후보자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후보자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도덕성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및 정책관에 대한 균형적인 검증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철저한 인

사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임. 이를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대통령실의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sup>18)</sup>

○ 사전 검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개인신상에 대한 평가(personal data assessment), 공직자로서의 다짐과 정책적 성향에 관한 후보자 개인의 진술자료, 대통령실의 공직 적격여부 검토결과임<sup>19)</sup>

- ‘개인신상평가’ 자료에는 주요경력, 재산, 국적, 병력, 민형사상 범죄이력, 배우자·자녀 관련 자료, NGO·정당활동 기록, 사회봉사 경력 등 전반적인 신상자료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함
- ‘공직자로서의 다짐과 정책적 성향’ 자료에는 관련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방향,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자신의 포부와 역할 기대, 신념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여부, 공직생활에서의 규범준수 여부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함
- ‘공직적격여부 검토결과’ 자료에는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과 도덕성, 정책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한 추천권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이상의 자료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에서 1차 예비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이 인사청문 심사결과 허위자료로 판명될 경우 청문회에서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에 집중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 네거티브에 매달린 청문회를 정책능력 검증에 주력하는 청문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18)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 현재 제18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박병석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804405).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19) 임동욱 교수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임.

- 국회차원에서 후보자를 평가할 경우 1차 예비심사에서 다음 항목과 같이 평가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본자료로 하여 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평가 기준	세부지표	지표의 내용
도덕성	범죄이력	- 민사 및 형사상의 범죄이력
	청렴성·정직성	- 위법·탈법·편법적 개인행위 여부 (학력, 경력, 군경력, 재산형성, 기타 개인적 활동) - 이전 소속기관 및 외부기관 활동시 규범준수 여부 - 개인업적 수행시 편법적 행위 여부
	책임성·신뢰성	- 국민정서에 부적합한 행위 및 경력 여부 - 개인 업적활동시 책임 및 신뢰관계 이행수준 - 개인적 언행 및 활동의 일치성·일관성
정책능력	주요 정책 관련성	- 개인적 경력, 전문성과 해당기관의 정책간의 관련성 및 기여 가능성
	주요 정책의 이해	-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 배경, 현재 추진상황, 이해관계자, 핵심 원인, 제약요인 등
	주요 정책이슈의 해결방향	-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전의 적절성 및 명확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 위임, 조직내 상하간의 소통, 정치권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 설득력 등
	조직관리 능력	- 조직적응력, 집행력, 변화관리 능력, 전략적 사고, 지지획득 능력 등
	감성지능	- 느낌과 감각, 상황맥락 지능, 타인에 대한 이해 등 EQ 능력

※ 위 평가기준의 각 지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문을 의뢰한 권용수 교수와 임동욱 교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이 평가기준은 기존의 도덕성 및 정책능력 중심의 인사청문회 평가기준에 리더십을 추가하였으며, 각 평가기준별로 세 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였음

-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작성시 위와 같은 세부지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방안

- 자료제출요구의 법적 근거는 현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 및 제19조 등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 그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 감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 (동법 제4조 제1항)<sup>20)</sup>
- 국정감사 때에도 늘 지적되는 문제이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서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행정부 등이 여러 가지 법률과 이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sup>21)</sup>

20) 이러한 입법형식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기본규정을 두면서, 거부할 수 있는 제약규정과 다른 법률에서 자료제출요구권과 상충되는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인 배제규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강력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김민엽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보장을 위한 법적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2. 12., 19면 이하.).

21)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 특권 등을 이유로 하여 자료제출거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대통령 특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음(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1974)).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의회나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 때에 각 헌법기관의 핵심적인 기능(essential function)의 수행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위판결, 707 참조).

-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생활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경우<sup>22)</sup>와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경우<sup>23)</sup> 등이 있음
- 18대 국회에서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sup>24)</sup> 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가. 비공개 열람제도 신설

- 이미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등이 있으므로 요구를 받은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가중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거부하는 원인에 대한 해소와 국회 자체에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2) 법무부가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헌법상 사생활보호규정에 위반되고,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을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그 외에도 기타 후보자 친인척의 병역관계, 진단기록, 납세실적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자료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해당기관들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2조상 비밀보장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내역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그 제출이 당해 규정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음(2003.3.29.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후보자(송광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43면 참조).
  - 24) 자료제출의 거부요건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에 한정하여 그 외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최규식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804495;박지원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806200).

-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곧장 언론에 공개하거나 공개된 청문회장에서 이를 공개하여 누설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제출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소명을 행정부 등 자료제공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회 소속의원들이 이를 비공개로 열람하고, 이때 비공개 열람으로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자료제출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하며, 이러한 비공개열람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위원 및 그 보좌기관 등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관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25)</sup>
- 구체적으로 비공개열람 절차를 정한다면,
  - ①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되, 이때 자료제출요구의 형식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사유 및 소명기회에 대한 설명 및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의 경우에 부과되는 처벌 등을 적시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료제출명령장<sup>26)</sup>으로 함

25) 실제로 국세청이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가족의 납세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여, 김충조 위원장, 임인배 간사, 강운태 간사, 윤경식 위원, 전재희 위원의 참석하에 비공개 열람을 실시하였고, 다만 동 자료가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자료로서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참석위원들의 결정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동의로 모든 특위위원들에게 배부한 사례가 있음(2003. 2. 국무총리후보자(고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97면 이하)

- ② 이 요구를 받은 기관이 사생활의 보호나 기타 다른 법률의 근거를 들어 그 공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할 수 있음
- ③ 소명을 받은 경우, 위원들은 비공개로 이 자료를 열람함
- ④ 인사청문회의 목적상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위원회 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공개 열람한 것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고 정할 수 있을 것임

#### 나. 위법한 공개 등의 제재

- 위의 절차에서 비공개열람하거나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출된 자료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리고 제출기관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경우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인사청문회 기능의 훼손 및 국회의원 품위손상 또는 국회의 신뢰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원의 경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자료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26) 이는 미국의 Subpoena 제도를 참고로 하였는바, ‘상설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제 10조 참조. 이 명령장에는 명령장의 지시를 어길 시에 벌칙 등을 명시하여, 명령장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명령장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미국의 명령장제도 등을 참고하여 강제집행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명령장의 발부를 곧장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규정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면책특권 관련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공개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유출하거나 누설한 의원 뿐 아니라 의원의 보좌직원 및 관련자의 경우도 제재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주의의무라고 하여 두고 있으나, 제재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의원에게만 적용하고 보좌직원이나 다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먼저 청문회에 관여하는 보좌직원이나 국회직원 등에 대해서 비공개자료의 유출책임에 대한 선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는 공개에 대해서 주체와 행위태양별로 비공개자료의 복사, 누설 등에 관한 제재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sup>27)</sup>

□ 청문회장에서 질문하는 의원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청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등을 정하고 사례들을 분석

27) ‘상설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제14조 및 19조 참조.

**상설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제14조 비공개 정보의 취급에 관한 절차...** (d) 선서 (1)요건.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위원회의 직원은 비공개정보에 접근할 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상설정보특별위원회 업무중 취득한 비밀자료를 위원회가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거나 공개를 하게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제19조 제재** (a) 일반.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원 누구라도 하원의 의사규칙이나 본 규정에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c) 가능한 제재. 당해 제재행위는 위원회 직원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다. 등

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적 발언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후보자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병력(病歷)이라든가 공개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사항은 비공개로 질의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질문할 의원들과 질문요지에 대하여 사전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개선방안

##### 가.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처벌의 법리

-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서 진술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인사청문회에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 후보자의 허위진술은 주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한 답변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제2항)에 비추어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sup>28)</sup>이 있음

- 반면 사실만을 말한다고 선서한 후보자가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거나, 또는 헌법의 자기부죄금지원칙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sup>29)</sup>
-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답변을 ‘증언’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증인이 될 수 없는 본인이 진술하는 것을 ‘증언’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우며, 이는 형사법상 원칙인 유추해석금지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외에 증인이나 감정인 등이 하는 위증과는 별개의 법리로써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후보자의 허위진술은 우선, 형사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목표로 하는 수사행위나 법적 진술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국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단,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sup>30)</sup>의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8) 조국 서울대 교수 등(‘청문회 위증’ 속수무책, 한겨레, 2009.10.10)

29)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청문회 위증’ 속수무책, 한겨레, 2009.10.10)

30)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근친자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 경우와
- 일정한 직에 있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익상 이익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진술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때 특별한 공익상 이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인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 정작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가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증인의 위증에 대한 형벌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음<sup>31)</sup>
-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미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 제재수단은 비형사적인 제재와 형사적 제재로 구별할 수 있음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 31)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129;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6200),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등을 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문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211) 등이 계류중임.

나. 비형사적 제재

- 비형사적 제재로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행한 위원장의 명의로 당해 허위진술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고, 임명권자에게 이러한 허위진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
- 또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 해당 공직 후보자가 이미 공직에 임명된 후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진술이 명백히 기망의 의도로 한 허위진술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허위진술임을 밝힐 때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일정수 이상이 발의하여 허위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진술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국회의장의 명의로 문서로 작성하여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 임명취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다. 형사적 제재

- 형사처벌을 새로이 규정한다면,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의 올바른 기능’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에 의한 국회모욕<sup>32)</sup>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다만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증인의 국회모욕죄가 규정된 것이 있으나, 주로 폭행이나 소란 등의 행위태양에 의한 것을 정함.

## V. 결론

- 인사청문제도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인사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개선과 자료제출이나 허위진술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그 외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이원적 운영의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업무능력검증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기간도 현행법상으로는 20일에 불과하여 충분한 인사검증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사전 준비단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청문회 자체는 3일 이내로 중요한 질문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의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2차 단계인 청문회 심사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후보자의 개인신상평가자료, 공직자로서의 다짐과 정책적 성향 자료, 대통령실의 공직적격여부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비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의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아야 할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하여서는 자료의 제출이 바로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열람제도의 절차, 비공개자료에 대한 누설의 경우 철저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입법적 보완을 할 수 있음
- 인사청문과정 중에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에 대한 훼손이 뭍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나,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비형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그간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만 위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워왔으나, 후보자 본인에게도 진술 등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이며, 중대한 공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증하는 의미있는 기회이므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인사청문이 실효성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능하고 사명감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부록 1]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 질문목록

□ 2009년 1월 13일 미국상원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 제	발 언 내 용
클린턴 재단 관련	빌 클린턴 대통령 및 클린턴 재단의 세계적인 활동을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클린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국내외의 인사들이 클린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곧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되고 난 후 클린턴 재단은 외국인의 기부를 받지 않거나 모든 기부자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MOU에는 생략된 것이 많고,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데, MOU를 수정해서 앞으로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기부금을 공개할 것인가?
	클린턴 재단에 대한 기부날짜와 기부금 액수 또는 새로운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액수 또는 최소한 분기별로 액수를 공개할 수 있겠는가?
	클린턴 재단은 테러리스트 관련 이란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원조자인 조직, 인물, 로비스트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214명의 미국인을 죽인 테러리스트의 가족을 돌봐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언제 기부가 이루어 졌는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날짜와 액수가 상세히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문제 관련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참여자와 기부자들은 처음부터 공개되고 계속 공개될 것인가? 또한 그 기부자들의 명단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주 제	발 언 내 용
	<p>후보자가 말한 새로운 MOU에 의하면 MOU가 수정된 이후의 새로운 기부자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되는데, 기존의 기부자들이 다시 기부하거나 기부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부자와 기존 기부자 모두의 기부금이 공개될 수 있게 수정할 생각이 있는가?</p> <p>필수적인 공개요건이 없으므로 외국의 기부금이 있어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필수 공개요건이 없는가?</p>
국무부 운영관련	<p>국무부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 문화적·도덕적 지원을 국무부가 제공할 수 있는가?(파월국무장관의 업적과 비교)</p> <p>국무부 직원의 증원에 대한 생각은?</p> <p>라이스 국무장관의 업적과 비교, 수단에 대한 정책에 있어 새롭고 과감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가?</p> <p>국무부 해외근무 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p> <p>부시정부는 국제경제 이슈를 재무부에서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국무부에서도 담당할 생각이 있는지?</p> <p>주(州)에 근무하는 LGBT의 직원과 USAID가 평등한 혜택과 지원을 받도록 하기위해 현재의 정책을 바꿀 것인가?</p> <p>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무부의 역할은 무엇인가?</p>
국무부 소관업무	<p>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포괄적인 지역정책에 적합하게 더 많은 미군을 파병할 것인가?</p> <p>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란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당근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왜 그런 정책이 이란의 계획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믿는가? 더 강력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까?</p> <p>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UN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p>

주 제	발 언 내 용
국무부 소관업무	부시정부는 이란과의 마지막 회담 때 차관을 읍저버로 파견하였는데, 당신도 미국 대표를 보낼 생각이 있는지?
	가까운 시기에 이란 고위층과 개인적으로 외교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작년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테헤란에 이익 대표부를 세우고 촉구했었고, 시리아에도 대사가 없는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테헤란에 이익 대표부를 설립하고 시리아에도 대사를 둘 것인가?
	WMD 확산 방지 보조가 필요한 나라들에서 위험한 병원균과 질병들이 난무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싫어하거나 비협조적인 부처와는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EU의 천연가스 분쟁처럼 NATO의 에너지공동체도 와해 가능성이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라크 비밀 계약자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동맹 발전을 위한 강력한 라틴 아메리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6자회담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6자회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난민 문제등과 같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OSCE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 세계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견과 이것을 법제화 시킬 의향이 있는가?
	빈국 원조에 관심을 가져라
	미국이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외원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해외원조를 위해 강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 제	발 언 내 용
국무부 소관업무	강력한 군대는 훌륭한 외교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함께 일할 게이츠(Gates) 장관은 민간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분쟁에 대해 국무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라크에 남게 될 군대의 성격 또는 이라크에 군대가 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미군의 잔류가 어떻게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오바마 대통령은 16개월 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러한 미군의 이동을 가능한 한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행시키기 위해 국무부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관련해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손을 떼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NATO 멤버의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의 원래 목적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사살하는 것이었지 미국의 51번째 주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과 비판,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극심한 경제위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는 즉시 10억 5천만 달러를 그들에게 원조했는데, 이렇게 가능한 한 재빠르게 행동에 옮긴 이런 정책을 현 정부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뉴햄프셔 지방에 수출기업이 있는데 일본이 덤핑을 해서 미 법원에 미국 무역법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일본은 바로 보복관세로 응수했음. 국무부는 이러한 사건이 미국 내 법원에서 일어났는데도 실제로 이 문제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 미국회사를 대신하여 국무부가 이러한 미국 무역법위반을 다룰 생각이 있는가?

주 제	발 언 내 용
국무부 소관업무	미국의 납세자들은 해외원조를 위해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해외 원조에 대한 할당과 미국 납세자들의 돈의 귀중한 값어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미국의 납세자들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UN의 경영 개혁에는 언제 착수할 것인가?
	외무보고서에 의하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중동의 평화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란은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이 있는가?
	쿠바와의 경제적 거래 제한에 관한 엄격한 법과 규정이 있는데, 가족의 방문과 물건의 발송에 관한 규제를 풀 생각이 있는가?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의해 미국이 포기하는 것과 다른 나라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미국은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같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가?
	알카에다가 소말리아에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소말리아는 2년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되어서 소말리아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방법은 부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정전을 깬는데, 하마스를 제지할 수 있는가?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후문제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지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문제에 전념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독립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국가 안보차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은 무엇인가?
	북극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해양법 조약을 우선적으로 비준할 것인가?

## [부록 2] 존 로버츠(John G. Roberts) 연방대법원장 인준청문회 질문목록

구 분	질 문 내 용
권력 분립 관련 (입법, 사법, 행정)	레이건 정권 때에 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에 제출하신 메모에는 마치 의회가 대통령이 전쟁을 강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쓰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통령도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전쟁선포와 종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포로들을 심문할 때에 고문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대통령의 전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법관들이 자신의 견해와 목적달성을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법안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안을 해석하는 역할과 입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자신의 임무인 법의 해석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주시겠습니까?
	입법부도 헌법에 의거해서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안들 중에 연방대법원과 연방고등법원들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의안들이 제출되어있는데 입법을 통해 법원들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관들이(사법부) 정책자로서 입법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법원은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을 해석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책자로서의 행동이 아닌가요?

구 분	질 문 내 용
판례와 선례 구속성의 원리	선례 구속성의 원리(Stare decisis)와 연방 법률구조에 있어서 판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판례들에 있어서 선례들의 구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헌법사례들의 경우, 선례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입법도와 맞지 않는 선례가 있을 경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현재 미국법의 문제	현재 미국에서 법률영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와 대법원의 역할	대법원의 정당성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법관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에 의한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헌법을 해석 하는 데에 있어서 대법관 각 개인의 견해와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자유와 사회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도나 법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뉴올리언스의 사태와 같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실 것입니까?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 할 때에 개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인이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구 분	질 문 내 용
	<p>생각하십니까? Wilder재판에서 정부를 변론하면서 개인이 개인의 의료 보증을 받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p> <p>법원이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p> <p>대법원장으로서 행정부/대통령에 맞서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까?</p>
외국법과 미국법의 관계	연방대법원이 미국헌법에 의거한 법률결정을 내릴 때에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외국의 법률사례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야한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장 직무에 대한 견해	<p>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대법관의 임기제한을 지지하십니까?</p> <p>대법원장으로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해외정보감시법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과 FISA법정 재심법원의 법관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p> <p>법관들을 임명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p>
대법원 재판 장면 방영	대법원에 올라오는 재판도 국민들을 위해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및 종교와 정부의 분리	<p>Lemon v. Kurtzman(정부와 종교의 관계 윤곽을 잡은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대법원이 반기독교적인 경향의 판례들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종교와 정부의 분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p>
권리장전 (기본권 조항들)	<p>미국이 전쟁 시나 평화 시에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동일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p> <p>911이후에 연방정부가 이민법에 의거해 많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p>
투표권법	<p>법무장관의 보좌관으로서 레이건의 투표권법을 기안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p> <p>법무차관으로서 대법원의 투표권법의 해석에 대해서 광범위한 해석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p>

구 분	질 문 내 용
인종차별	Brown v. Board of Education(국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관련 법률사례)에서 법정이 내린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헌법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의거해 국립학교에 있어서 평등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시점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964년 공민권법(Civil Rights Act)가 인종차별철폐에 관련해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락사	연방법원들이 안락사와 관련된 사법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 보호권리 (Right to Privacy)	사생활보호권리(Right to Privacy)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범위까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보호권리(Right to Privacy)가 헌법에 의거해 볼 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보호권리(Right to Privacy)가 헌법수정 제 14항에 의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보호권(Right to Privacy)에 의한 피임의 권리는 정착된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수정 제1항이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르노물과 문학작품들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레벨의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기를 태우는 행동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권한법	전쟁권한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조항 (Commerce Clause)	통상조항에 의거한 국회의 권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내의 무역도 통상조항에 의거해 국회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질 문 내 용
환경문제	Franklin County v. Gwinnett Public Schools(환경문제관련)에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이 정당한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임금	과거 레이건 정권 때에 동일 임금을 지지하셨는데 지금도 동일 임금에 대학 지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형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수정 제8항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권	<p>여성 인권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p> <p>사생활 보호 권리가 여성의 낙태까지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p>여성폭력은 실제적인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사회가 확대 인지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p> <p>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 대통령께서 여성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예전에 작성하신 메모 또는 사법적 의견들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관점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가요?</p>
직업 및 직무경험	<p>사법부와 행정부에서의 경험은 많으신 반면 입법부에서 일하신 경험이 없으신데 이러한 경험들이 대법관으로 일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p> <p>사형수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자문(pro bono)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법률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무엇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p>이들의 준비기간만 주어지고 대법원에서 변론을 해야만 했고 같은 당일 다른 법정에서도 서야하는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p> <p>Frendly 재판관과 Rehnquist 재판관의 로클럭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데 이 두 재판관 밑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p> <p>“레이건 혁명“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구 분	질 문 내 용
	<p>보수적인 레이건 정권과 부시정권에서 일할 때에 동료들과 달리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던 이슈가 있었습니까?</p> <p>Bob Jones대학 정책 재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p>
<p>특정 판례에 관한 의견</p>	<p>Roe v. Wade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p> <p>Hamdi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p> <p>Lemon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p>
<p>개인적 성향</p>	<p>젊었을 때와 나이를 들어가면서 바뀐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p> <p>반대편의 견해를 존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p> <p>대법관 Rehnquist를 법적 멘토(스승)로 생각하시죠? 그의 법률 철학과 얼마나 유사한 법률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p> <p>대법관 Scalia와 자신을 비교하였을 때에 누가 더 보수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p> <p>911의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인 관점이나 법적 견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부록 3] 필리핀의 인사청문제도

### 1) 법적 근거와 인준대상

- 필리핀 인준위원회(Commission on Appointments)<sup>33)</sup>는 필리핀 의회소속 기관으로, 필리핀의 1987년 「헌법」 제7장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7장 제16조

대통령은 인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장관, 대사, 영사, 군 지휘관 그리고 헌법에 의해 그 지명이 위임되어 있는 관리를 지명할 수 있다.

- 인준위원회의 구성 및 인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준위원회규칙(Rules of the Commission on Appointment)」에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 중 인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행정부처의 장관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 대사나 영사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from the rank of Colonel or Naval Captain)

33) 필리핀 인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mappt.gov.ph/>

- 사법인사 추천위원회 위원  
(Regular Members of the Judicial and Bar Council)
- 국민서비스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Chairman and Commissioner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Chairman and Commissioner of the Commission on Elections)
-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Chairman and Commissioner of the Commission on Audit)
- 지역 및 자문위원회 위원  
(Members of the Regional and Consultative Commissions)

## 2) 인준위원회의 구성

- 인준위원회는 상원의원 12인, 하원의원 12인, 상원의장 등 총 13인으로 구성됨
  - 의회가 구성된 지 30일 이내에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인준위원회 위원이 선출됨
  - 위원은 원내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선출됨
  - 인준위원회 위원장은 상원의장이 맡음
- 인준위원회에는 후보지명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총 2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음
- 인준위원회의 인사권한은 정파성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는 단일한 동기에 의해서만 불편부당하게 행사되어야 함

### 3) 의회의 인준절차

-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서를 인준위원회에 제출함
  - 후보지명자가 인준위원회 규칙 제5장 제24조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명서를 회부함
-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명서는 2개의 종합일간지에 공표되어야 함
  - 이 사실에 대한 증명서는 인준위원회 서기가 서명하여, 후보지명자에 대한 심사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이전에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함
- 지명사실이 공표된 지 1주일 이내에 소관위원회는 후보지명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함
  - 각 후보지명의 장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소관위원회는 추천서를 작성함
  - 후보지명자를 인준하는 추천서는 본회의 기간 동안 인준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정해짐
  - 반면 소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후보자지명은 보다 더 심사를 받게 됨
- 인준위원회의 결정은 전체 위원에 의한 다수결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
  - 출석한 위원만이 표결권을 행사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짐
  - 인준안은 인준위원회에 제출된 지 30일(회기일 기준)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함

-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대해서 인준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지명을 인준하는 것 이외에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음
  -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지명을 거부함
  - 인준안을 추가심의하라고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냄
  - 인준위원회의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둠
-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지면 인준위원회는 후보자가 성공적으로 인준절차를 통과했고, 후보자가 해당 공직에 적합함이 입증되었다는 인준증명서를 발급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함
- 인준위원회가 후보지명에 대해 내린 결정은 회기가 휴회될 때마다 대통령에게 보고됨

## 참고문헌

- 미국 상원 홈페이지 관련자료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Nominations.htm>>
-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Plumbook  
<[http://www.gpoaccess.gov/plumbook/2008/index.html#executive\\_president](http://www.gpoaccess.gov/plumbook/2008/index.html#executive_president)>
- 김철수, 「헌법학」, 서울, 박영사, 2008
-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8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6권제1집, 헌법재판소, 2004
-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제3호, 2003
- 국회사무처 법제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보장을 위한 법적 검토,” 2002
- 제281회 국회(임시회) 대법관(신영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2009. 2. 10.
-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2009. 9. 21- 9. 23.
- 김민엽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보장을 위한 법적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2
2003. 3. 29.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후보자(송광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03. 2. 국무총리후보자(고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청문회 위증’ 속수무책, 한겨레신문, 2009. 10. 10
2005. 9. 15.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 Hrg. 109-158, Confirmation Hearing on the Nomination of John G. Roberts, Jr. to b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Morton Rosenberg, "Investigative Oversight: An Introduction to the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Congressional Inquiry," CRS Report 95-464A, 1995

Harold C. Relyea, "Presidential Advisors' Testimony Before Congressional Committees: A Brief Overview" CRS Report RL31351, 2002

Henry B. Hogue, "Supreme Court Nominations Not Confirmed, 1789-2008," CRS Report RL31171, 2009

Lorraine H. Tong, "Senate Confirmation Process: A Brief Overview," CRS Report RS20986, 2009



##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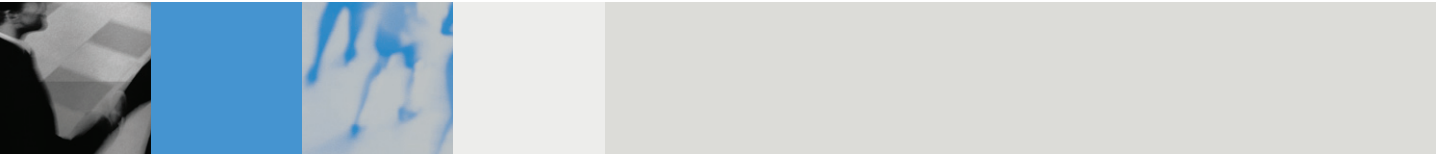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모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총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	박충렬 정민정
제42호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	김준영 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	김경민 신가은
제44호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현안보고서 제45호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현안보고서 제45호

---

발 간 일 2009년 11월 12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31-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